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11. 3. . (제 184 회)	

고령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 
일부개정규칙안

제 출 자	이달호의원 외 6명
제출 연월일	2011. 3. .

## 1. 의결주문

고령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## 2. 제안이유

「고령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」 제5조에서 직원의 정원을 정하도록 위임한 「고령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」 등 관계 법규가 2010. 12. 24일 개정됨에 따라 고령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을 개정된 내용에 맞게 정비하고자 함.

## 3. 주요내용

가. 전문위원의 직급이 지방행정사무관으로만 정해져 있는 것을 전문위원별로 5급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으로, 6급은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농업주사 또는 지방시설주사로 개정함.(안 제3조)

## 4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고령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」 제5조(직원의 정원) 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원 「고령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」로 정한다.  
제6조(시행규칙)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사무과의 사무분장 등은 따로 「고령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」으로 정한다.
- 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- 다. 신·구조문대비표 : 별첨

## 고령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

고령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- ①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두는 전문위원은 2명으로 하며, 1명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으로, 다른 1명은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농업주사 또는 지방시설주사로 보한다.

### 부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          행	개   정   안
<p>제3조(전문위원) ① <u>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두는 전문위원 직급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한다.</u></p> <p>② (생   략)</p>	<p>제3조(전문위원) ① <u>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두는 전문위원은 2명으로 하며, 1명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으로, 다른 1명은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농업주사 또는 지방시설주사로 보한다.</u>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의회사무과	
연 락 처	(054) 950 - 6404